

韓國老年學研究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Gerontology

2001, Vol. 10, 5-30

노인부부가계를 위해 추정된 노후 월평균

생계비의 활용 방안*

이 선 형

국제신학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요약) 본 연구는 노인부부가계를 위해 추정된 노후 월평균생계비가 국가와 가계, 기업의 각 경제주체들에 의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의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노후 월평균생계비는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1,649 노인부부가계를 대상으로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토대로 추정되었으며, 그 활용방안을 크게 3가지 차원에서 제안했다. 첫째, 원하는 생계수준별 소득대체율 추정을 토대로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노후 대비를 위한 3단계 보장법을 제안했다. 둘째, 개별가계의 노후대비 재무설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후 평생생계비를 각 가계의 특성에 따라서 제안했는데, 이는 가계마다 조건에 따라 다른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노후의 최저 월평균생계비 추정을 근거로 기업차원에서 활용 가능한 고령근로자 임금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했는데, 노인가계의 최저생계비가 비노인가계보다는 낮으므로 기업에서는 적정임금지급을 통한 고용부담 감소가, 또한 고령근로자에게

* 본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1999년도 신진연구인력 연구장려금 지원에 의해 수행된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151-869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1동 1577-5번지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선형 교수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자의 e-mail 주소는 onlyyou90@chollian.net입니다.

이 선 형

는 자기에게 적절한 임금수준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Key Words: 노후 월평균생계비, 노후 평생생계비, 소득대체율, 최저생계비, 표준생계비]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부모부양 규범에 의하면, 노인이 자신의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며 또 자식에 대한 부모의 투자는 노후보장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부양의식의 변화 등의 사회구조 변화로 인하여 ‘자식에 대한 부모의 투자가 곧 노후보장’이라는 공식이 성립되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에 따라 20세기말의 30~40대는 자기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으로부터는 독립해야 하는 첫 세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일보, 1997. 3. 23).

이러한 사회현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노후를 자신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노인단독가계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의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에 의하면, 비노인층의 73.7%가 ‘노후에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활을 해결하겠다’ 그리고 62.8%가 ‘노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 응답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고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근래에 도입했던 탓에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으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었던 계층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준공적연금 가입대상자로 한정되어 있었다. 즉 현재 대다수의 한국노인들은 아직도 개별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의 부양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에 의해 노후가 보장되는 선진국에 비해 공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원천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그렇지만 외국노인들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노후소득은 전체 필요소득의 50~70% 정도이며, 필요 소득의 부족한 부분은 자산이나 근로 소득을 통해 충당한다 (Harrison, 1986; Crown, Longino & Cutler, 1993; Hitschler, 1993; Radner, 1995).

이는 우리 나라의 미래의 노인들이 공적연금의 혜택을 받게 되더

노후 월평균 생계비 추정

라도 이 연금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소득액의 100%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따라서 노후에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후에 어느 정도의 소득이 필요한가, 또 이를 위해 얼마나 저축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노후소득 및 저축액수는 노후 생계비를 기초로 산출되며,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계비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정부의 빈곤선 설정이나 노동자측의 임금협상을 위해 실시된 최저생계비에 관한 것들이 몇 편 있지만, 그들이 산출한 최저생계비의 편차가 몹시 큰 편이다. 예를 들면, 노동자측에서 추정한 최저생계비는 당해 연도 평균소득대비 115.9%이었던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99), 동년 정부측에서 추정한 최저 생계비는 당해 연도 평균소득대비 43.0%에 불과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이와 같이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 이유는 정부와 노동자측의 연구목적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연구대상이나 측정방법, 기준 생활수준이 다른 데에 기인할 수도 있다. 설령 최저생계비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편차가 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행연구에서 측정된 생계비를 노인가계에 적용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선행연구의 경우가계구성을 근로자인 남편, 전업주부인 부인과 자녀 2명인 30~40대 근로자로 하여 생계비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퇴직자이며 또 건강이나 가계구성 등이 상이한 노인가계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선형, 2001; 이선형·이연숙, 199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노인가계와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노인부부가계를 대상으로 노후 월평균 생계비의 산정 및 그 생계비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생계비는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므로 연구대상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이 선 형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계연보에 나타난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연령별 무직자 비율, 연령별 의료비지출 비중, 가족수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년기의 특성인 경제, 사회 및 신체적 의존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연령층은 55세 이상이였으며, 이것이 두드러진 연령층은 65세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연령 65세 이상인 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생계비의 산출은 어느 집단을 표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노인가계라고 하더라도 자녀와 동거하는가, 노인부부로만 이루어졌는가, 또는 노인단독의 가계인가에 따라서 가계경제수지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양세정, 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이러한 차이는 노인부부만 사는 가계와 자녀와 같이 사는 가계의 생계비를 직접 비교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계의 경우에도 독인가계와 부부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독인가계의 경우 빈곤한 노인이 다수를 차지해 필요생계비 하향의 우려 때문에 2인 부부가계를 표준가계로 설정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은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이면서 자녀와 별도의 가계를 운영하고 있는 노인부부가계이다. 표본의 크기는 도시가계조사의 가구주 연령 65세 이상인 전체 노인가계의 53%에 해당되는 1,649가계였다.

사용 자료

통계청에서는 전국 72개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계를 모집단으로 층화 및 확률비례 방식으로 매월 5,500가계의 표본을 추출하는데, 1년 동안 거의 66,000가계가 추출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99년도에 실시한 도시가계조사의 원 자료 중 일부였는데, 당시 매월 추출되어 조사된 가계 수는 평균 5,246가계였다. 또 표본으로 추출된 가계가 1월에서 12월까지 모든 기간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표본가계의 연간지출에 대한 월별 자료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1월에서 12월까지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다.

노후 월평균 생계비 추정

조사방법에서 비목별 지출은 가계부 기장방식으로 조사되었으며, 가계소득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면접조사에 의했다. 조사내용으로는 가계소득과 10개 비목별 소비지출자료, 조세와 이자 등을 포함한 비소비지출자료, 저금, 부채에 관한 기타지출자료, 기타는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었다. 도시가계조사에서 제공하는 비목 중 일부 비목의 세부항목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변경하였다. 예를 들면, 도시가계조사에서는 귀속임대료가 주거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가와 전세·월세보증금의 귀속임대료를 주거비에 포함시켰다.

연구목적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에서의 노인부부가계를 대상으로 노후 월평균생계비를 추정하는 것과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노후 월평균생계비는 각 가계별로 원하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와 표준생계비, 유락생계비로 산출되었으며, 또 건강이나 취업 상태 등의 노인가계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생계비를 조정한 상태에서 산정되었다.

이렇게 산정된 노후 월평균생계비는 세 가지 측면에서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국가차원에서 제공하는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결정할 때 활용될 수 있다. 둘째, 각 가정이 처한 상황과 원하는 생활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상태에서 가계의 노후준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고령근로자를 위한 임금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모든 자료의 분석은 SA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선행 연구결과

산정된 생계비가 실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필자가 선행연구(이선희, 2001)에서 산정했던 노후 월평균생계비와

이 선 형

가계의 상태에 따라 조정된 노후 월평균생계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 장에서 소개되는 ‘노인부부가계를 위해 추정된 생계비의 활용 방안’에서 사용되는 수치가 모두 이를 근거로 했기 때문이다.

1. 노인부부가계의 월평균생계비

생계수준에 따라 조정된 월평균생계비

생계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선정된 표준가계를 통해 산정된 표준생계비이다.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와 유락생계비가 조정되는데¹⁾, 표준생계비의 추정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한다. 하나는 소비지출 분포상의 40~60%인 집단을 표준으로 삼은 다음 이 집단의 가구원수별, 비목별 중앙값의 합을 표준생계비로 보는 방법으로, 이를 ‘순수상대표준선’에 의한 표준생계비라고 칭한다. 다른 하나는 노인부부가계를 전체 집단으로 놓고 이 집단의 비목별 중앙값의 합을 표준생계비로 보는 방법으로, 이를 ‘유사상대표준선’에 의한 표준생계비라 지칭한다. 여기에서 순수와 유사의 개념은 순수상대빈곤(pure relative poverty)과 유사상대빈곤(quasi relative poverty)이라는 개념에서 나왔는데 (이두호·최일섭·김태성·나성린, 1991), 표준선은 빈곤선과 달리 두 개념이 유사한 측정치를 보일 수 있으나 측정방법의 구분을 위해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여기에서 중앙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소비지출이 log-normal 분포로 왼쪽으로 치우쳐 있으므로 평균이 생계비를 상향 평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표준생계비 추정에서 총 가계지출의 중앙값을 표준생계비로 하지 않고 비목별 중앙값을 구하여 그 합을 산정한다. 그 이유는 비목별 중앙값의 합을 살펴볼 경우 어느 비목을 얼마만큼 지출

1) ‘최저생계비’는 노인부부가계 중 일정비율 이하의 계층을 기준으로 그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노후동안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월평균생계비이며, ‘표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약간의 여유가 있는 노후 월평균생계비이며, 또 ‘유락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노후 월평균생계비를 말한다.

노후 월평균 생계비 추정

하고 있는가 등 생계수준을 구성하고 있는 품목과 지출비중을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전물량방식으로 측정된 결과와도 비교하면서 보다 정확히 생계비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수상대표준선을 적용해 생계비의 수준을 조정한 경우 소비지출 40~60%인 집단의 비목별 중앙값을 중심으로 하위 27.5~37.5%인 집단을 최저생계비로 하였다. 또 표준생계비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차이만큼을 표준생계비에 더한 값, 즉 소비지출 순위 상위 27.5~37.5%인 집단의 비목별 중앙값을 유락생계비로 정했다. 그 기준은 기존의 연구들을 분석할 때 평균소비지출에 대한 최저생계비 비율이 55~75%에 집중되며 중앙값의 55~75%인 분포가 27.5~37.5%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마련되었다. 이는 빈곤연구에서 저소득층을 30% 부근으로 설정하는 것과도 일치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유사상대표준선을 적용한 생계비 수준은 Hefferan(1987)의 기준을 적용한다. 즉 최저생계비의 경우 비목별 지출 중앙값의 ⅔를 ‘상대빈곤선(lower living standard)’ 또 ⅓을 ‘사회적 최저선(social minimum standard)’으로 구분한다. 유락생계비는 비목별 지출 중앙값의 1.5배인 선이며, 두 기준을 적용한 생계비는 <표 1>과 같다. 표준생계비는 순수상대표준선에 의할 때 월 844,980원, 유사상대표준선에 의할 때는 평균값을 사용한 경우 월 1,250,471원 그리고 중앙값을 사용한 경우

<표 1> 노인부부가게 월평균 생계비: 주거비 포함(제외) [단위: 원]

	표준생계비	최저생계비	유락생계비
순수상대표준선	844,980 (444,980)	713,400 (353,400)	1,068,020 (568,020)
유사상대표준선 I (중앙값)	842,300 (422,300)	(⅔) 421,150 (211,150) (⅔) 561,533 (281,533)	1,263,450 (633,450)
“ II (평균값)	1,250,471 (757,402)	×	×

이 선 형

월 842,300원이었다. 순수상대표준선에 의한 표준생계비와 중앙값을 사용한 유사상대표준선에 의한 표준생계비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평균값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치이나 극단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 값으로, 평균값에 의해 계산된 1,250,471원(유사상대표준선 II)은 가계지출 분포상의 66.9%에 해당되어 중앙값보다 16.9% 높게 나타났다. 이에 앞으로 표준생계비는 중앙값을 통한 유사상대표준선과 순수상대표준선에 의한 결과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표준생계비의 ½을 적용한 최저생계비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최저생계비의 정의[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낮은 편이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최저생계비 설정기준으로 평균소비지출의 68%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앙값을 사용했는데, 중앙값은 소비지출 분포에서 평균값보다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의 ½기준의 최저생계비는 중앙값의 50%를 최저생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일본의 68% 기준보다 현저히 낮아진다. 따라서 ½기준의 최저생계비는 최저생계수준의 하한선으로 보아 이는 제외하고, 유사상대표준선에 의한 최저생계비는 ⅔기준의 최저생계비만 사용하기로 한다.

노인가계의 특성에 따라 조정된 생계비

앞에서 산정된 월평균생계비는 노인가계의 특성 중 생계비에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 중에서 건강과 취업 상태만을 고려하여 조정되었다²⁾. 조정을 할 때 도시가계연보에서는 응답가계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의료비로 건강 상태를 살펴보았다. 즉 보건·의료비 지출이 전혀 없는 집단을 ‘건강하다’고 가정하고, 보건·의료비 지출이 소비지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집단을 ‘건강하지 못하다’고 가정하였다³⁾. 또한 가계마다 취업상태

2) 도시가계만을 조사하는 도시가계조사 자료의 한계 때문에 도시와 농촌 간의 생계비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3) 건강상태와 취업여부를 고려한 생계비 산정에서는 앞에서 산정된 두 가지 방식의 표준생계비 중 유효한 표본수 확보를 위해 유사상대표준선에 의한 표준생계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노후 월평균 생계비 추정

에 따라서 생계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계별 퇴직 전후의 생계비를 비교하여 필요생계비의 변화를 판단하는 종단적 분석을 시도해야 한다. 그러나 자료의 제약과 함께, 우리 나라에서는 그러한 퇴직자가계의 생계비 감소에 대해 보고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략적인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취업자와 비취업자 집단의 비교를 통해 취업상태가 생계비에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건강상태에 따른 생계비의 차이의 경우 건강이 좋은 집단의 표준생계비는 787,363원이었으며, 건강이 좋지 못한 집단은 843,901원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집단의 생계비가 약 5만 7천원 정도 더 높았다(<표 2> 참조). 이는 20만원 정도의 추가 의료비 지출로 인한 생계비 증가에 기인한다⁴⁾.

다음은 취업상태에 따른 생계비의 차이를 살펴보면, 취업자가계 1,019,111원, 비취업자가계 786,620원으로 취업자가계가 약 23만 2천원 정도 더 많았다. 즉 취업자의 생계비는 중앙값을 기준으로 비취업자의 129.6%로 나타나 약 30% 가량의 추가생계비가 필요했다. 이는 양세

<표 2> 가계상황에 따른 생계비의 조정 [단위: 원]

		월평균 표준생계비
전체 (N=1,649)		842,300
건강 상태	좋은 (N=229)	787,363
	나쁨 (N=278)	843,901
취업 상태	취업 (N=351)	1,019,111
	비취업 (N=1,298)	786,620

4) 그러나 생활의 질은 건강이 좋은 집단이 더 높았다. 지출액수로 볼 때 보건·의료비와 가구집기, 가사 용품비, 교통·통신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비목에서 건강이 좋은 집단이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다. 반면 건강이 좋지 못한 집단은 의료비에 상당부분을 지출하고 대신 다른 비목에 대한 지출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있었다.

이 선 형

정(2000)이 보고한 취업자가 비취업자에 비해 높은 소비지출을 나타낸다는 결과와 일치한다⁵⁾.

노인부부가계를 위해 추정된 생계비의 활용 방안

앞에서 산정된 표준생계비 그리고 노인가계의 요구 및 상황에 따라 조정된 생계비가 실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공적연금의 급여수준 설정 측면, 개별 가계의 재무설계 측면, 기업에서의 활용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공적연금의 급여수준 설정

노인가계의 생활수준별 생계비는 정부의 정책 중 공적연금의 급여수준 설정을 위한 소득대체율을 산정할 때 활용될 수 있다. 노후소득보장의 의미에서 소득대체율은 퇴직 후 안정적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퇴직 전 소득 대비 퇴직 후 소득의 비율을 말하며, 이는 생계비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이유는 소득대체율이 퇴직 후의 적정소득을 기초로 해서 산출되고, 또 그 적정소득이 적정 생계비에 기초해서 산출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이 있는데, 이 중 노후생활의 보장을 위한 제도로 노령연금이 있다. 원칙적으로 60세에 도달했을 때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이 노인가계의 충분한 소득원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급급여수준을 책정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국민연금 지급급여의 최저수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30년 가입 표준소득자

5) 취업자와 비취업자의 표준생계비는 비목별로 볼 때 피복·신발비와 보건·의료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취업자의 생계비가 더 낮았다. 특히 식료품비와 교통·통신비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자의 경우 외식·출퇴근 교통비용 등 직업관련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비는 취업자의 경우 비취업자에 비해 30%가량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비취업자가 취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이라는 원인도 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뜻한다.

노후 월평균 생계비 추정

의 경우 과거소득의 40~45%가 최저수준이다. 이를 40년 가입기간에 단순 비례하여 계산할 경우 53.3~60%가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40년 가입 평균소득자(표준소득월액 26등급)를 기준으로 4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기로 했지만, 국민 여론의 반대로 점차 상향조정하여 1998년말 국민연금법개정안에서는 60%가 채택되었다 (권문일, 1999; 국민연금관리공단, 2000). <표 3>을 보면, 표준소득월액 26등급이면서 40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60% 그리고 20년 가입자는 30%로 1년마다 약 1.5%의 소득대체율이 추가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2000). 그러나 40년을 가입하는 경우보다는 실질적으로 30년 내외로 가입한다고 볼 때 소득대체율은 45% 내외가 된다.

이러한 소득대체율이 과연 노후생활에 적절한 선인가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시도되고 있다. 여기서 적절한 수준의 소득대체율 측정은 적절한 수준의 표준생계비나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는 것만큼 다양하다. 소득대체율 산정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오영수·이경희(1998), 원종욱(2000), 윤석명(2000)은 ‘공적연금이 어느 정도 대체되어야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이 되는가’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권문일(1999)은 ‘공

<표 3> 국민연금의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 [단위: %]

가입기간	표준소득월액*	
	1,290,000원 (26등급)	1,560,000원 (29등급)
20년	30	27
25	38	34
30	45	41
35	53	48
40	60	55

* 표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신고소득)을 기준으로 등급(1~45)별로 적용되는 금액(국민연금법 제 3조 5항)이며, 표준소득월액에 따른 예상연금월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2000) 참조. 출처: 원종욱 (2000).

이 선 형

적 연금 가입 시 얼마를 대체해주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퇴직 전의 생활수준 유지를 위해 퇴직 후 어느 정도 소득이 필요한가의 차원에서 소득대체율을 정하고자 하므로 전자의 경우와 같은 맥락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공식이 응용되었다.

$$\text{표준(최저,유락)생활을 위한 소득대체} = \frac{\text{노인부부가계의 표준(최저,유락) 생계비}}{\text{예비노인(60-64세) 가계의 총지출}}$$

앞의 공식에서 분자는 앞에서 산정된 노후 월평균생계비 그리고 분모는 퇴직 전 기간인 60~64세의 5년간 총지출의 중앙값을 사용하며 총지출은 가계지출에 귀속임대료를 가산한다. 이러한 수치의 의미는 퇴직 후 최저·표준·유락수준의 가계를 유지하기 위해 퇴직 전 소비하던 수준의 몇 % 소득이 필요한지를 산정하는 것이다.

노후의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노후에 필요한 소득대체율을 측정 한 결과는 <표 4>부터 <표 6>까지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표준 생활을 위한 소득대체율이 43.2%에서 64.5%까지 이른다. 예비노인이 노년기에 들어서면 약 50%의 소득이 필요하며, 예비노인 때 유직이었

<표 4> 노인가계의 표준생활을 위한 소득대체율 [단위: 원]

60~64세	전체(N=3,271)			취업자(N=2,052)		
	전체			전체		
	가구원수	2인	3인	가구원수	2인	3인
가계지출	1,256,320	859,340	1,305,340	1,334,680	992,930	1,284,120
주거비	460,000	450,000	453,100	486,000	450,000	460,000
총지출(가계지출+주거비)	1,716,320	1,309,340	1,758,440	1,820,680	1,442,930	1,744,120
소득대체율 1 ¹⁾	49.2%	64.5%	50.3%	·	·	·
2 ²⁾	·	·	·	43.2%	54.5%	45.1%

1) 총지출 대비 노인부부가계의 표준생계비(844,980원)에 따른 소득대체율

2) 총지출 대비 노인부부가계중 비취업자의 표준생계비(786,620원)에 따른 소득대체율

노후 월평균 생계비 추정

〈표 5〉 노인가계의 최저생활을 위한 소득대체율

60~64세	전 체 (N=3,271)			취업자 (N=2,052)		
	전체			전체		
	가구원수	2인	3인	가구원수	2인	3인
가계지출	1,256,320	859,340	1,305,340	1,334,680	992,930	1,284,120
주거비(귀속임대료)	460,000	450,000	453,100	486,000	450,000	460,000
총지출(가계지출+주거비)	1,716,320	1,309,340	1,758,440	1,820,680	1,442,930	1,744,120
소득대체율 ¹⁾	39.6%	49.9%	39.3%	38.2%	47.4%	39.9%
2)	32.7%	42.9%	31.9%	30.8%	38.9%	32.2%

- 1) 총지출 대비 순수상대표준선에 의해 조정된 최저생계비(713,400원)에 따른 소득대체율
 2) 총지출 대비 유사상대표준선에 의해 조정된 최저생계비(561,553원)에 따른 소득대체율

〈표 6〉 노인가계의 유락생활을 위한 소득대체율 [단위: 원]

60~64세	전체 (N=3,271)			취업자 (N=2,052)		
	전체			전체		
	가구원수	2인	3인	가구원수	2인	3인
a. 가계지출	1,256,320	859,340	1,305,340	1,334,680	992,930	1,284,120
b. 주거비(귀속임대료)	460,000	450,000	453,100	486,000	450,000	460,000
c. 총지출(a+b)	1,716,320	1,309,340	1,758,440	1,820,680	1,442,930	1,744,120
소득대체율 ¹⁾	62.2%	81.6%	60.7%	58.7%	74.0%	61.2%
2)	73.6%	96.5%	71.9%	69.4%	87.6%	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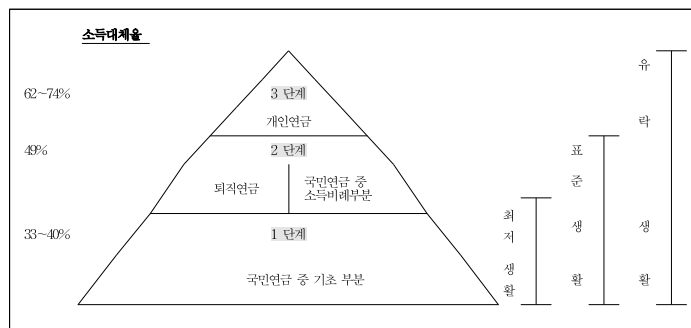
- 1) 총지출 대비 순수상대표준선에 의해 조정된 유락생계비(1,068,020원)에 따른 소득대체율
 2) 총지출 대비 유사상대표준선에 의해 조정된 유락생계비(1,263,450원)에 따른 소득대체율

던 상태에서 노년기에 들어서 무직인 상태로 변하면 직장관련 비용의 감소로 이보다는 낮은 43.2%의 소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이 선 형

맥락으로 최저생활을 위한 소득대체율은 30.8%에서 49.9%까지 (<표 5> 참조), 그리고 유락수준을 위한 소득대체율은 58.7%에서 96.5%에 이른다 (<표 6> 참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의 소득대체가 반드시 공적연금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정하지 않고, 필요한 소득은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생활수준별로 산정된 소득대체율을 중심으로 노후의 소득을 준비할 때 다음과 같은 3단계의 방법으로 보장을 하도록 제안한다(<그림 1> 참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예비노인의 퇴직 전 지출의 최소한 33~40%의 소득은 대체되어야 하며, 표준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10%의 추가소득은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 중 소득비례부분을 이용하고, 마지막 여유가 있는 생활을 위한 추가적 10~20%는 개별가계가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그림 1> 생활수준에 따른 노후소득대체율과 노후대비 방법

가계의 노후대비를 위한 재무설계 기초자료 제공

개별 가계의 입장에서 보면 노년기를 누구와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생애주기 마지막 단계에 남은 과업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가의 여부가 생애만족감을 좌우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 월평균 생계비 추정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하려는 사람은 점점 줄면서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진다는 생각이 더 짙어져가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사회보장금만으로 노후의 전체 필요소득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Crown 등, 1993; Harrison, 1986; Hitschler, 1993; Radner, 1995). 이는 필요생계비의 일정 부분은 개별가계 차원에서 준비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노후 생계비가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일은 개별가계가 자립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노후동안 필요한 자금은 생활비, 긴급예비비, 장례비, 긴급의료비 등 여러 가지로 구성되는데, 이 중 가장 기초적이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생활비, 즉 노후 월평균생계비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계산된 노후 평생생계비는 긴급예비비나 장례비, 긴급의료비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순수 생활에만 들어가는 비용이다. 즉 노후 평생생계비는 65세 이상 노인부부가계가 기대여명까지 생존할 경우 필요한 총생계비를 의미하는데, 이를 계산할 때 노후 월평균생계비가 활용될 수 있다. 이 생계비가 순수상대표준선과 유사상대표준선에 의한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조정되었으므로, 생활수준에 따른 노후 평생생계비 산정 시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한다.

장래 인구추계에 의하면 현재 40대가 노인이 되는 2020년도의 평균수명은 남성 74.5세와 여성 81.7세이다 (통계청, 2000). 따라서 65세에서 82세까지의 생계비를 산출하되, 65~74세까지는 부부 모두가 생존한다고 가정하여 2인 가계의 생계비를 계산하고, 그 이후의 생계비는 여자 혼자만 생존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에서 추정한 1인 가계의 생계비는 2인 가계의 가계균등화지수를 1로 보았을 때 .604 정도가 된다 (<표 7>에서 응용 참조). 이렇게 산출된 노후 평생생계비가 <표 8>에 요약되어 있다.

<표 7> 가계균등화 지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균등화지수	0.349	0.578	0.795	1.000	1.137	1.283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p. 242.

이 선 형

<표 8> 생계수준에 따른 노후 평생생계비 [단위: 원]

생계수준		65~74세의 평생생계비 : 노인부부 (A)	75~82세의 평생생계비 : 노인독신 (B)	65~82세의 노후 평생생계비 (A+B)
최저 생계	순수상대표준선 이용	85,608,000	41,365,786	126,973,786
	유사상대표준선 이용	67,383,960	32,559,936	99,943,896
표준 생계	순수상대표준선 이용	101,397,600	48,995,320	150,392,920
	유사상대표준선 이용	101,076,000	48,839,904	149,915,904
유락 생계	순수상대표준선 이용	128,162,400	61,928,072	190,090,472
	유사상대표준선 이용	151,614,000	73,259,904	224,873,904

최저생계수준을 상정할 경우 9,994만원 정도에서 1억 2,697만원 정도의 노후 생활자금이 필요하며, 표준생계를 유지할 경우 1억 4,992만원 정도에서 1억 5,039만원 정도가, 유락생계수준을 유지할 경우 1억 9,009만원 정도에서 2억 2,487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노인부부가 표준생계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되었다.

$$\begin{aligned} \text{표준생계일 경우} &= (844,980 \times 10\text{년} \times 12\text{개월}) + (844,980 \times 0.604 \times \\ &8\text{년} \times 12\text{개월}) = (101,397,600) + (48,995,320) = 150,392,920\text{원} \end{aligned}$$

연구결과에서 산정된 노후 평생생계비는 65세 이상인 노인부부가 계 집단을 가정하였다. 그러나 65세 이상인 집단이 노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특징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55~64세 연령에서도 일부 집단은 퇴직을 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들의 노후대비를 위해 다양한 퇴직연령을 고려한 자금산정도 필요하다. 또 앞에서 노후 평생생계비를 산정

노후 월평균 생계비 추정

할 때에는 평균수명을 고려하여 65~74세에는 노인부부가 함께 살고 그 이후 82세까지 혼자 산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도 있지만 여생을 혼자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에 노인독신으로 여생을 마치는 경우를 별도로 산정했다. 역시 노인부부가게 생계비는 건강이나 취업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퇴직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른 생계비를 산정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를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표 9>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노후 평생생계비는 가계의 상황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평생생계비에서는 적게는 1억 7천만원에서 많게는 7억 7천만원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가계마다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노후가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9>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노인부부가계의 노후 평생생계비
물가상승률 5%일 경우 (0%일 경우) [단위: 원]

		55세 퇴직시 (55~82세)	60세 퇴직시 (60~82세)	65세 퇴직시 (65~82세)
최저생계	건강 좋음	293,086,228 (177,410,676)	230,546,604 (130,940,076)	167,526,980 (86,429,796)
	건강 나쁨	342,054,406 (209,839,116)	280,490,166 (154,131,240)	209,699,398 (103,941,120)
	전체가계	320,058,715 (197,029,944)	261,441,547 (143,988,780)	193,511,355 (95,826,780)
표준생계	건강 좋음	441,515,964 (266,116,020)	345,819,906 (196,410,120)	251,290,470 (129,644,700)
	건강 나쁨	511,786,942 (314,758,680)	419,440,582 (231,196,860)	313,254,420 (155,911,680)
	전체가계	480,088,073 (295,544,934)	392,162,321 (215,983,188)	290,267,033 (143,740,188)
유락생계	건강 좋음	659,444,013 (399,174,024)	518,729,859 (294,615,168)	376,935,705 (194,467,044)
	건강 나쁨	769,622,417 (472,138,020)	631,102,877 (346,795,284)	471,823,634 (233,867,520)
	전체가계	720,132,110 (443,317,386)	588,243,481 (323,974,776)	435,400,549 (215,610,276)

이 선 형

그 다음으로 노인 혼자 거주할 경우의 생계비를 산정하였다. 노인 부부가계의 노후 평생생계비를 산정할 때와 동일하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와 5%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상태를 함께 제시하였다. 1인가계의 생계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이 산정한 2인가계 대비 1인가계의 가계균등화지수인 0.604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물가상승률 5%를 가정한 경우 1억 2천만원 정도에서 5억 3천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참조).

이렇게 산정된 노후 평생생계비를 현재 가진 자산과 비교하면 각 가계가 앞으로 저축해야 할 금액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현재 40세인 사람이 배우자와 현재 함께 살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건강한 상태에서 64세까지 일하고 나서 퇴직한다고 가정하자. 물가상승률은 0%로

<표 10>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노인독신가계의 노후 평생생계비
물가상승률 5%일 경우 (0%일 경우) [단위: 원]

		55세 퇴직시 (55~82세)	60세 퇴직시 (60~82세)	65세 퇴직시 (65~82세)
최저생계	건강 좋음	198,213,712 (115,278,278)	160,439,779 (87,210,036)	122,375,926 (60,325,828)
	건강 나쁨	218,628,433 (137,167,577)	196,612,604 (103,520,018)	153,854,980 (73,205,186)
	전체가계	218,604,564 (128,699,696)	183,199,794 (96,662,836)	142,169,958 (67,572,988)
표준생계	건강 좋음	298,460,088 (172,917,418)	240,659,669 (130,815,055)	183,563,889 (90,488,742)
	건강 나쁨	349,721,071 (205,751,366)	293,943,869 (155,280,027)	229,807,423 (109,807,779)
	전체가계	327,906,846 (193,049,544)	274,799,692 (144,994,254)	213,254,938 (101,359,482)
유락생계	건강 좋음	445,980,852 (259,376,127)	360,989,503 (196,222,582)	275,345,834 (135,733,113)
	건강 나쁨	526,044,163 (308,627,049)	442,378,361 (232,920,040)	346,173,692 (164,711,668)
	전체가계	491,860,269 (289,574,316)	412,199,537 (217,491,381)	319,882,406 (152,039,223)

노후 월평균 생계비 추정

가정할 때 이 가계가 노후에 표준적 생활을 유지하고 싶을 경우에는 약 1억 3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표 9> 참조). 그 다음으로 현재 가진 자신의 자산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총자산이 5,000만원이 있을 때 앞으로 추가로 저축해야하는 돈은 8,000만원이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신의 저축액이 결정된다면 자신의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 자신의 현재 지출과 미래 지출 등 다양한 가계상황을 고려한 재정관리도 하게 될 것이다. 즉 원하는 수준과 자신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저생계수준으로 노후의 기대 생활을 낮추게 되며, 생활수준을 낮추고 싶지 않을 경우 노후의 안정적 추가 소득원 확보를 위한 다른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노후준비를 위한 합리적인 재무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에서의 활용

임금협상에 목적을 둔 생계비 연구들은 그 대상을 30~40대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노동연구원, 1996;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97; 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8). 그러나 앞으로 5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1999년 928만명에서 2020년 1,853만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35.4%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2020년이 될 경우 국민 3명중 1명이 50세 이상, 국민 5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의 인구가 된다 (노동부, 1999).

그러나 기업 측에서는 생산성 저하나 생산성에 비해 과다한 임금 지불 등의 이유를 들어 고령근로자를 조기 퇴직시키거나 이들의 채용을 꺼리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도 대부분 연공서열제에 의한 임금지급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의 증가는 곧 임금의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근로자를 60세 이상까지 고용하기를 꺼리고 있으며, 이에 고령근로자의 취업 직종은 82.3%가 단순노무직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 1999).

그러나 국가나 사회 모두 고령인구를 부양의 대상이 아닌 활용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기업에서도 2020년만 하더라도 5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

이 선 형

때는 이들에게 적정임금 지급의 문제가 대두할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 법에서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을 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령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이러한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앞에서 취업상태에 따라 생계비를 살펴보았을 때, 취업자의 생계비가 비취업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취업상태인 노인가계의 경우 비노인집단에 비해 전체적으로 생계비가 감소하지만, 식료품비나 교통·통신비, 비소비지출 비목의 지출이 비취업자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노인 중 취업자 집단의 생계비가 직업을 유지할 경우 필요한 생계비라 가정하고, <표 1>에서 산출된 표준생계비를 중심으로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고자 한다(<표 11> 참조).

생계비 조정비율은 앞에서 적용시켰던 최저생계비 비율에 따라

<표 11> 취업한 노인부부가계의 최저생계비와 표준생계비 [단위: 원]

지출비목	최저생계비		표준생계비
	유사상대표준선 적용	순수상대표준선 적용	
소비지출			
식료품비	190,703	241,430	286,054
주거비	300,000	379,800	450,000
광열·수도비	29,957	37,925	44,935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5,240	6,634	7,860
피복·신발비	1,333	1,689	2,000
보건·의료비	14,000	17,724	21,000
교육비	0	0	0
교양·오락비	5,000	6,330	7,500
교통·통신비	30,667	38,824	46,000
기타소비지출	85,633	108,412	128,450
비소비지출	16,875	21,363	25,312
표준생계비1 (주거비제외)	362,533	458,966	543,799
표준생계비2 (주거비포함)	662,533	838,766	1,019,111

노후 월평균 생계비 추정

계산된다. 즉 유사상대표준선에 의한 최저생계비는 표준생계비의 %를 기준으로 하며, 순수상대표준선에 의한 최저생계비는 소비지출 하위 27.5~37.5%인 집단에 속한 노인부부가게 중 취업자만을 뽑아 이들의 비목별 중앙값의 합으로 하였다.

직업이 있는 집단의 표준생계비는 1,019,111원, 유사상대표준선에 의한 최저생계비는 662,533원, 순수상대표준선에 의한 최저생계비는 838,766원이었다. 이를 노인가게와 비노인가게의 생계비를 비교할 경우 취업상태인 노인가게의 표준생계비는 가구원수 2인인 비노인가게의 생계비 1,036,280원보다 17,169원 낮고, 노인가게의 표준생계비인 842,300원보다는 176,811원 높다. 순수상대표준선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경우 838,766원으로 노인부부가게의 최저생계비 561,533원보다 높고, 비노인가게의 690,853원보다 높으며, 유사상대표준선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경우 662,533원으로 노인가게의 최저생계비인 561,533원보다 높으며, 비노인가게의 690,853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취업자의 생계비는 전체 노인가게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비노인가게와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가족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생계비가 임금으로 지급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고령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임금을 지급할 경우, 기업으로서는 적정임금 지급을 통해 고용 부담을 줄이고, 고령근로자는 자기에게 적절한 수준의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추정된 노후 월평균생계비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적연금의 급여수준 설정과 관련한 소득대체율을 산정했다. 그 결과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기간에 비해 33~40%의 소득, 표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10~20%의 추가소득, 그리고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서는 이보다 10~20%의 추가소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서도 공적연금이 노후의 전적인 소득보장의 역할을 하지 못할 뿐더러 노후의 전

이 선 형

적인 소득보장에 목적이 있지도 않다. 따라서 국가에서 최소한 퇴직 전 소득의 33~40%는 보장을 해 주고, 개별가계 입장에서 추가의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을 활용하여 준비하는 3단계 보장법의 사용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제안한다.

둘째, 개별 가정의 노후 준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노후 평생생계비를 산정하였다. 이는 가계마다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컸다. 가장 많이 필요한 가계는 부부가 함께 거주하면서 55세에 퇴직하고, 유약생계수준을 원하며, 건강은 좋지 않은 상태일 때 평생생계비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했을 때 4억 7천 2백만원 가량이며, 물가상승률을 5%로 가정할 경우 7억 7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적게 필요한 가계는 독신 거주자이면서 65세 퇴직하고, 최저생계를 원하면서 건강이 좋은 상태일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했을 경우 약 6천만원 가량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5%로 가정할 경우 1억 2천 2백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가계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필요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도 노인에게 일괄적인 복지정책을 취하는 것이 아닌 가계에 맞는 복지정책을 취해야한다. 결국 개별가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기업이 고령근로자의 임금 산정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위해 노인부부가계 중 취업자 중심으로 표준생계비와 최저생계비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표준생계비는 1,019,111원, 최저생계비는 유사상대표준선을 적용할 경우 662,533원과 순수상대표준선을 적용할 경우 838,76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노인가계보다는 많으며, 비노인가계보다는 낮게 나타나 기업으로서는 적정임금지급을 통해 고용부담을 줄이고, 고령근로자는 자기에게 적절한 수준의 임금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뜻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생계비 측정방식 중 통계해석 방식을 사용해 생계비를 계산하였다. 이 방식은 여타 방법에 비해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가계의 생

노후 월평균 생계비 추정

계비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태생계비이므로 실제 생활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왜곡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즉 노년기가 되었을 때 그 이전 생애주기보다 생계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생계비가 낮게 산출된 것인지, 아니면 절대적 소득이 적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물량방식, 반물량방식, 라이텐방식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생계비 산정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가계조사 자료상의 한계로 인한 분석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건강과 취업 상태에 따라 생계비가 차이가 날 것으로 여겨 분석하였으나, 도시가계조사에서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소비지출에서 보건·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대신하여 결과를 얻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건강상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건강상태에 따른 생계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좀더 정확한 자료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퇴직 후 필요생계비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직업이 있는 집단과 직업이 없는 집단을 구분하여, 직업이 있는 집단은 퇴직 전이고 직업이 없는 집단을 퇴직 후라고 가정하여 생계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이는 한 가게의 퇴직 전과 퇴직 후의 생계비 차이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종단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도시가계를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농촌지역과의 차이점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또 도시가계에서는 2인가계 이상을 조사하기 때문에 1인가계의 생계비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산정한 가계균등화지수를 활용하였는데, 이 가계균등화지수가 노인가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의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노인의 거주형태별 비율을 살펴보면 노인독신가계는 노인부부가계와 비슷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노후 생계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1인 단독으로 구성된 가계, 특히 여자노인의 생계비도 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시가계조사 자료의 제약 이외에도, 현재 1인가계의 경우 빈곤한 성향이 강해 2인가계와는 다른 사회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포함하여 통계분석방식을 사용할 경우 생계비가 하향 평가될 우려가 있어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다른 생계비 산정방식을 활용해 이

이 선 형

들의 생계비도 측정되어야 한다.

셋째, 노후에 필요한 평생생계비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비와 긴급예비비나 긴급의료비, 장례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비의 개념만 포함해서 노후 평생생계비를 산정하였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노후에 긴급예비비나 의료비, 장례비 등을 고려하여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민연금관리공단 (2000). <http://www.npc.or.kr>.
- 권문일 (1999). *국민연금급여의 적절성 분석*. 서울: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센터.
- 노동부 (1999). *50세 이상을 위한 고령자 취업 가이드*. 서울: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 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8). <http://www.kwwwnet.org/data/updata/980121-1.h-tml>
- 양세정 (2000). *노인가계의 경제수지 분석: 노인생활의 현황과 과제*.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가을 심포지움 자료집 (pp. 25-34).
- 오영수·이경희 (1998).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 연금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서울: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 원종욱 (2000). 국민연금의 적정소득대체율 분석. *보건복지포럼*, 45, 32-42.
- 윤석명 (2000).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 46, 49-62.
- 이두호·최일섭·김태성·나성린 (1991). *빈곤론*. 서울:나남출판사.
- 이선형 (2001). *노인부부가계를 위한 월평균생계비 산정*.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선형·이연숙 (1998). 노인생활실태에 따른 생활서비스 요구. *고려대 사대논집*, 22, 127-156.
- 중앙일보 (1997. 3. 23.). *사회면 기사*.
-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서울: 통계청.

노후 월평균 생계비 추정

- 한국노동연구원 (1996). *최저임금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97). *도시근로자 생계비 조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99). *도시근로자 생계비 조사*. 서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최저생계비 계측 조사연구*. 서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Crown, W., Longino, C., & Cutler, N. (1993). Net worth and economic diversity of the elderly, *Journal of Aging and Social Policy*, 5 (4), 99-118.
- Harrison, B. (1986). Spending patterns of older persons revealed in expenditure survey. *Monthly Labor Review*, 109 (10), 15-17.
- Hefferan, C. (1987). Family budget guidelines. *Family Economics Review*, 4, 1-9.
- Hitschler, P. (1993). Spending by older consumers 1980 and 1990 compared. *Monthly Labor Review*, 116 (5), 3-13.
- Radner, D. (1995). Incomes of the elderly and non-elderly, 1962-1992. *Social Security Bulletin*, 58 (4), 82-97.

The Estimate of the Living Cost for the Elderly Couple

Sun-Hyung Lee
Dept. of Social Welfare
Kukje Theology Graduate University
Seoul, Korea 151-869

This study was to estimate living cost for the elderly couple to practical use. Data on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for the 1,649 elderly households, surveyed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ere used for the estimation. The three practical use were suggested. First, to maintain standard level of living after retirement, needed income ratio was 43~50% of pre-retirement income, meaning that 33~40% of elderly income was provided by National Pension. Second, estimated living cost can be applied to personal finance to prepare for his old age. To maintain standard level of living, total living cost for their ages was about 150 million won. Third, estimated living cost is applied to offer basic data for assessing wage of aging workers to a business sector. The living cost of elderly households was about 81~83% comparing with non-elderly households.

(논문접수일: 2001년 10월 20일)
(수정논문접수일: 2001년 11월 13일)
(논문게재승인일: 2001년 11월 16일)